# 심 사 보 고 서

## 【남양주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311

2023. 11. 30. 복지환경위원회

#### 1. 심사경과

가. 제출연월일 및 제출자 : 2023. 11. 10. / 김영실 의원 등 13명

나. 회부일자 : 2023. 11. 13.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23. 11. 30.

## 2. 제안설명 요지

## ○ 제안이유

남양주시 난임극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난임부부의 복지 향상과 출산 장려에 기여하고자 함.

### ○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정의, 책무 등에 대해 규정 함(안 제1조~제4조)

- 나. 지원대상, 지원사업에 대해 규정 함 (안 제5조~제6조)
- 다. 실태조사, 사무위탁에 대해 규정 함 (안 제7조~제8조)
- 라. 중복지원 제한, 지원중단, 환수조치에 대해 규정 함 (안 제9조~제11조)
- 마. 준수사항, 시행규칙에 대해 규정 함(안 제12조~제13조)

####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서용관)

- 본 안건은 난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난임부부의 경제적, 심리적 부담 경감과 출산 지원정책을 통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모자보건법」제11조에는 "난임(難妊)"을 포함한 모자보건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난임극복 지원사업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10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녀의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아울러 우리나라 출생률 저하 문제가 지속적으로 대두되는 가운데,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발표 자료(2023.5.25.)에 따르면 난임 시술 환자 수는 2018년 12만 1,038명에서 2022년 14만 458명으로 16% 증가했으며 최근 5년간 난임 시술 환자의 진료비는 6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정부에서는 난임극복을 위하여 난임부부 치료시술(보조생식술)에 대한 급여 기준을 확대하였고, 경기도는 지난 7월부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기준 완화 및 한방 난임치료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시는 국·도·시비 매칭사업으로 난임치료 시술비를 지원하는 등 난임극복을 위한 지원사업을 추진 중에 있음.
-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자치사무에 해당하며 법령의 범위 내에서 난임극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조례 제정을 통해 사업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하여 출산 지원 정책에도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에 따라 별다른 문제점은 없어 보임.

- 4. 질의 · 답변요지 :
- O 회의록 참고
- 5. 토론요지 : 없 음
-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 7. 소수의견 요지 : 없 음